

1. 개정이유

정부조직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 및
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이
제·개정됨에 따라, 마약류 보상금 지급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마약류
보상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약류보상금지급절차 중 신청절차, 지급절차 등에서 ‘지방검찰청
검사장(지청장을 포함한다)’을 ‘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
포함한다)’으로 개정함(안 제3조, 제9조, 제18조)
- 나. 법무부 직제 개정에 따른 마약류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
(안 제6조)
- 다.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(서식안 제1 내지 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정부조직법, 공소청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지 서식

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(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, 제5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18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검찰국장”을 “형사사법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OO지방검찰청(OO지청)”을 “OO지방공소청(OO지청)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OO지방검찰청검사장(OO지청장)”을 “OO지방공소청장(OO지청장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중 “OO지방검찰청(OO지청)”을 “OO지방공소청(OO지청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신청절차)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 (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신청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.
②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.	② <u>지방공소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와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	③----- <u>지방공소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보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)	제6조(보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)
①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<u>검찰국장</u> 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	②----- ----- <u>형사사법국장</u> -----

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제9조(의사) ① 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이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②~ ③(생략) 제18조(지급절차)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에게 송부하고,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.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. ③(생략)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, <u>지방검찰청 검사장</u>이 이를 작성·비치한다.	----- -----. 제9조(의사) ① ----- -----<u>지방공소청장</u>----- ----- -----. ②~ ③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지급절차) ①----- ----- ----- -----<u>지방공소청장</u>-----<u>지방공소청장</u>----- -----. ②----- ---<u>지방공소청장</u>----- -----. ③(생략) ④----- ----- ----- -----<u>지방공소청장</u>----- ---.
---	---

보상금지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1일	
신청인 (대상자)	성명			성별		생년월일	
	주소					연락처	
	소속						
	직업(직위)						
신청내용	사건개요						
	압수품					수량	
	처벌사항						
	신청인소견						
보상금 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	계좌번호			
	예금주(신청인)						

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「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금융정보(입금계좌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	
본인은 금융기관이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 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마약류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익명·가명 신청시 기재사항	
※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익명·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익명·가명신청 검사승인
사유 :	
확인자 (기관명)장 인	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 의	→	결 정	→	통보·지급
신청인		지방공소청장 (지방공소청 지청장)		법무부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		법무부장관		지방공소청장 (지방공소청 지청장)

공 로 조 서

대 상 자	소 속 (주 소)		직 위	
	성 명		생 년 월 일	
사 건 번 호	○ ○ 지 방 공 소 청 (○ ○ 지 청) 형 제 호		피 의 자	
신 고 · 고 발 · 검 거 일 시			검 거 자	
압 수 품			수 량	
검 찰 처 분	처분일자		추 징 예 상 금 액	
	처분내용	구 공 판 / 구 약 식 / 기 소 유 예 / 기 타 (구 형)		
재 판 선 고	선 고 일 자		법 원	
	형 기		벌 금	
	몰 수 품 금 액		추 징 금	
공 로 내 용				
의 건	마약류보상금 원 지급			

년 월 일

작성자 ○ ○ 지 방 공 소 청 (○ ○ 지 청) 검 사 (서명 또는 날인)

확인자 ○ ○ 지 방 공 소 청 장 (○ ○ 지 청 장) (서명 또는 날인)

검 찰 총 장 의 건	
----------------	--

법무부장관 귀하

보상금지급심의서

1. 대상자

성명	
생년월일	
주소	

2. 심의내용

사건번호	○○지방공소청(○○지청)형제호	피의자(피고인)
검찰처분	처분일자	처분내용
재판선고	형기	벌금원
	몰수품금액원	추징금원
공로내용		
기타사항		

3. 심의결과

주문	대상자	에게	마약류보상금	원	지급(신청기각)
이유					

위와 같이 심의함

년 월 일

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회

위원장	(서명 또는 날인)
위원	(서명 또는 날인)
위원	(서명 또는 날인)
위원	(서명 또는 날인)
위원	(서명 또는 날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26.10.2.>

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

1. 대상자

성명	
생년월일	
주소	

2. 대상사건

사건번호	○○지 방공소청(○○지청) 형제 호	피 의 자 (피 고 인)	
공로내용			

3. 결정내용

주 문	대상자	에게 마약류보상금	원 지급(신청기각)
이 유			

위와 같이 결정함.

년 월 일

법무부장관

직인